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년 5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0.2. 10, 4.22(수정안) 평창군수(기획실장)
- 나. 회부일자 : 2000. 2.10, 5. 15(수정안)
- 다. 상정일자
 - 제7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조례특위(2000.2.10)상정·계류
 - 제7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조례특위(2000.5.15)상 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신대송)

가. 제 안 이 유

- 『새세기 신사고 활기찬 평창』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실천사항을 제시하기 위함.

「수정안」

- 제3조(마을자치기반 확립)의 마을자치회 구성
 - 당초 : 마을자치회를 구성
 - 수정 : 평창군 리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한 리자치 위원회에서 주관
- 제16조(주민의 역할)
 - 주민의 역할부분 강조어구 수정

나. 주 요 골 자

- 군의 역할 : 안 제2조 ○ 마을자치기반 확립 : 안 제3조
- 자치역량의제고 :안 제4조 ○ 최고의 서비스 문화조성 : 안 제5조
- 음식문화의 개선 : 안 제6조 ○ 주거환경 개선 : 안 제7조
-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 안 제8조 ○ 산지의 활용 : 안 제9조
- 환경보존 : 안 제10조 ○ 문화관광 진흥 : 안 제11조
- 복지환경 조성 : 안 제12조
- 공공시설이용의 편리와 청결유지 : 안 제13조
- 향토인재 육성 : 안 제14조 ○ 교류협력 증진 : 안 제15조
- 주민의 역할 : 안 제16조 ○ 재정지원 : 안 제17조

「수정안」

- 제3조(마을자치 기반조성)
 - 마을자치회 구성조항 삭제 → 리자치위원회에서 관장
 - 리자치위원회에서 분과위 구성운영(세대별 대표 1인 참여)
- 제16조(주민의 역할) 강제규정 부분 어구조정
 - 노력하여야 한다 ⇒ 노력한다
 -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력을 기울인다
 - 조성해야 한다 ⇒ 조성한다
 - 생각을 버려야 한다 ⇒ 생각을 버린다.
 - 홍보요원이 되어야 한다 ⇒ 홍보요원이 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태영)

□ 관계법령을 보면

-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의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는 제한을 두어 신중을 기하고 있음.

□ 내용검토

-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평창군이 갖고있는 지리적 여건과 문화적 자산등 유·무형의 가치를 주민모두가 상호협력을 통하여 최적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순리와 상식 그리고 인정을 바탕으로한 국민의 고향,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음.
-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군의 역할, 마을자치기반 확립, 자치역량제고, 서비스 문화조성, 음식문화, 주거환경 개선등과 주민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 위와 같이 각분야별 군과 주민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는등 전체적으로 군의 의지표명으로 볼 수 있음.
- 안 제3조의 내용은 마을자치기반 확립을 위한 규정으로 마을 자치회를 전주민이 가입할 수 있고 자치회장, 부회장, 감사가 있으면서 마을 공동의 일을 스스로 협의·처리하도록 되어있음
 - 이것은 현재 리별로 구성되어 있는 **이장, 반장등의 일선조직**과의 **관계역할 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6조의 주민역할에서 살기좋은고장 만들기 위하여 주민 각개인을 각분야에서 부단한 노력과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하고 모든 일에 솔선 수범하여 앞장서고, 남에게 의지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추상적, 포괄적 의무 부과행위로 볼 소지가 있어 주민의 의무부과 행위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전체 군민에 관한 내용으로 상당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됨,

따라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그외 법령형식·자구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수정안」

- 조례제정 위임규정(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제정조례입니다.
- 본 조례안은 제7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2000.2.10)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으로 보류되었던 조례임.

첫째 : 제3조(마을자치기반 확립)의 마을자치회와 기존의 읍면 자치위원회와 관계정립이 미흡

둘째 : 제16조(주민의 역할)중 주민의 역할이 강제적 의무부과 행위로 볼 소지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

○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수정한 것으로

- 수정내용 제3조의 마을자치회 구성을 기존의 리자치회에서 관장하고 리자치회에는 분과위를 두도록 하였음.
 - 또한 제16조(주민의 역할)의 주민역할 강제적 어구를 조정한 것임
- 입법취지에서 밝힌바와 같이 평창군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가치를 주민 모두가 상호협력하여 주민의 고향, 살기좋은 고향

으로 만들기 위하여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밖의 법령형식이나 자구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의안 원안1부 . 끝.